

#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정비지침

## 1. 현 황

### ① 정비대상

- 에어컨실외기등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 ② 미정비된 배기구로 인한 피해

- 열기배출로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등 보행환경 저해
- 여름철 도시의 체감기온 상승 가중
-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저해

### ③ 관련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및 부칙)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에 대하여는,
  -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배기구는 '04.8.31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 ※ '02.8.31 법령개정이후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2년간의 정비기간 유예

#### ④ 배기구 정비현황

(‘04.6.30 현재)

	총 계			에어컨 실외기			환풍기		
	발생	조치	잔존	발생	조치	잔존	발생	조치	잔존
총 계	53,859	12,935	40,924	52,180	12,368	39,812	1,679	567	1,112
서울	18,454	1,445	17,009	18,434	1,445	16,989	20	0	20
부산	2,000	223	1,777	1,675	190	1,485	325	33	292
대구	3,162	1,883	1,279	2,926	1,712	1,214	236	171	65
인천	2,993	150	2,843	2,936	150	2,786	57	0	57
광주	1,623	149	1,474	1,603	144	1,459	20	5	15
대전	996	440	556	971	428	543	25	12	13
울산	713	112	601	711	111	600	2	1	1
경기	5,118	2,029	3,089	4,778	1,946	2,832	340	83	257
강원	1,737	440	1,297	1,701	435	1,266	36	5	31
충북	2,947	886	2,061	2,902	859	2,043	45	27	18
충남	3,555	752	2,803	3,464	744	2,720	91	8	83
전북	1,710	189	1,521	1,583	170	1,413	127	19	108
전남	1,563	220	1,343	1,432	195	1,237	131	25	106
경북	2,063	1,244	819	1,952	1,178	774	111	66	45
경남	4,597	2,694	1,903	4,484	2,582	1,902	113	112	1
제주	628	79	549	628	79	549	0	0	0

## 2. 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방향

### ① 기본 방향

#### ○ 신규 설치하는 경우

- 건축허가·사용검사시 실외기의 설치공간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 기존에 설치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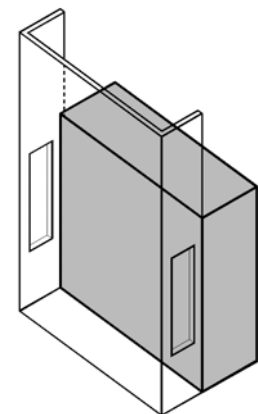
- 영업허가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 벌칙조항의 무리한 적용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계도에 중점

## ② 설치 기준

- 배출구가 실외기의 상부 또는 측면에 설치되었거나 실외기 없는 신규제품으로의 교체
- 지면으로부터의 2m 상부 혹은 직접 도로면에 면하지 않는 건축물 벽면으로 설치장소를 변경
  - 옥상등이 아닌 벽면상부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추락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고정철물등 설치 철저히 점검
  - ※ 실외기가 도로면에 면하여 설치되나 직접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경계선과 최소이격거리 필요
    - 2m이상 : 에어컨 표시 냉방면적 23평형 또는 3마력 이하
    - 4m이상 : 에어컨 표시 냉방면적 23평형 또는 3마력 초과
-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방향만을 바꾸어 배출구를 벽면에 향하도록 하거나 도로면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미관 및 에너지 효율에 문제가 있으므로 단속대상에 해당
- 도로경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설치위치의 배출구면에 커버를 덧대어 배기방향을 조정·보수하는 방안

### ※ 배출구 커버 최소제원

- 배출방향을 실외기의 상부나 측방향으로 조정
- 재질 : 내열재료로서 흰색이나 실외기와 동일색상이되 모서리는 완만히 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 형태 : 전체적으로 실외기면과 평행을 유지하되 (밀면/측면등 개방가능) 상부는 실외기 윗면에서 직선 돌출하거나 후면으로 예각을 주어 보행자의 신체 상부에 직접 열기가 닿지 않도록 할 것



<설치예>

- 커버의 간격, 상부돌출길이 및 각도등 구체적인 수치는 실외기별 용량특성따라 제조업체등의 기준 준수
  - 지침시행이전 설치된 커버는 규정의 적합여부를 본 지침과 별도로 지자체가 별도확인하여 조치
- 기타 보행자에게 열기가 직접 닿지 않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없으며 미관이 고려된 방법으로서 해당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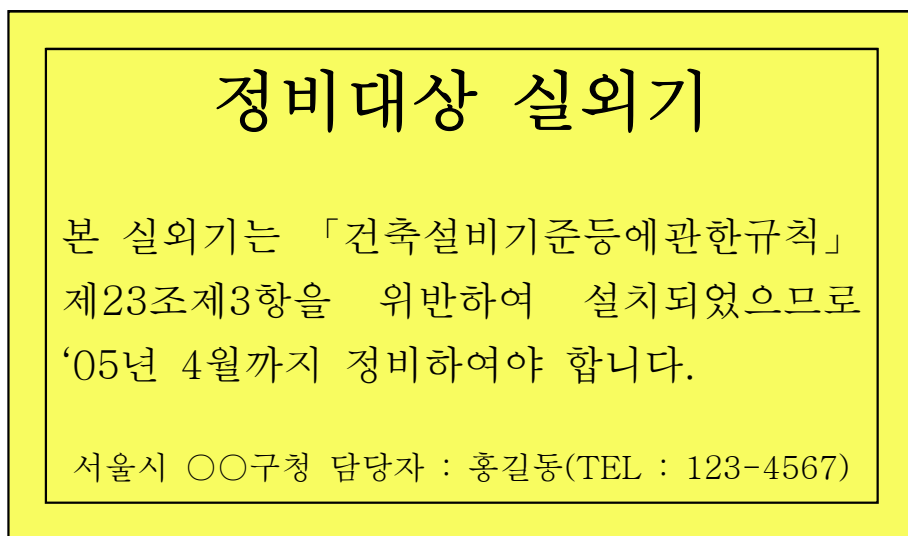
### ③ 조치계획

#### ○ 시정명령

- 규정시행시기가 에어컨 미사용기간이므로 벌칙적용시 민원발생의 우려에 따라 적발후 '05년 4월말까지 시정기간 부여
- 정비대상 실외기에 '정비대상스티커'를 부착하고 대상자에게 '정비안내문' 통보

#### ※ 정비대상스티커

- 색상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휴먼명조체)
- 글씨크기 : 제목-진하게 25pt, 내용-15pt, 담당자-12pt
- 스티커크기 : 가로 12cm, 세로 7cm(내부 가로 10cm, 세로 6cm)



○ 시정독촉

- 시정명령기간이 완료되기 두 달 전인 '05년 3월부터는 미정비된 실외기에 대하여 정비독촉 안내를 개별 실시하여 최대한 자진정비 유도

○ 시정명령 미이행시 벌칙

-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 ※ 에어컨 실외기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는 도로법등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등 부과가능

④ 홍보방안

○ 홍보방법

- 홍보책자/리플렛 마련하여 동사무소, 공공장소등 배포
- 요식업관련 단체등을 통하여 개별업소 정비계도 및 지도
- 정비대상 실외기가 설치된 장소에 개별 방문 및 계도
-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관련법령 내용
- 정비방법
- 부과대상 에어컨 실외기의 종류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및 부과금액 공지

## ⑤ 행정상 조치사항

### ○ 정비현황 보고철저

- 기 송부된 양식에 따라 미정비된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의 배기구에 대하여 매 분기별 정비실태 보고 (매분기 경과 10일 이내, 건교부 건축과)